國際法上 國軍의 作戰指揮權 移讓 公翰의 有效性

副敎授 中領 金 明 基

<法學科>

<目 次>

Ⅰ. 序 論

Ⅱ. 作戰指揮權移讓의 經緯

1. 韓國動亂의 勃發과 安全保障理事會의 措置

가. 6月 25日의 決議

나. 6月 27日의 決議

다. 7月 7日의 決議

2.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設立과 作戰指揮權의 移讓

Ⅲ.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法的 性格

1. 條 約

2. 特別協定

Ⅳ.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有效性

1. 國內法上 有效性

2. 國際法上 有效性

Ⅴ. 適用 範圍

1. 時間的 適用範圍

2. 空間的 適用範圍

Ⅵ. 結 論

Abstract

Validity of "Exchange of Public Letters Concerning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in International Law

On June 25, 1950, the Secretary—General was informed by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hat North Korean forces had invaded Korea that morning.

The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of June 25, 1950 (S/1501), after determining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e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d a "breach of the peace", called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for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forces to the 38th parallel",

On June 27,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a United States draft resolution (S/1511), nothing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d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and recommanding that member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ight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On July 7, the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S/1588) "requested all member states providing military forces in pursuance of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to make them available to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requested the United States to designate the commander of such forces, and authorized the use of the United Nations flag by the Unified Command. The next day President Truman of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General MacArthur as Commanding General. Subsequently combatant units were provided by sixteen member states.

Republic of Korea, as a non—member state, though not directly affected by the Resolution on July 7,assigned to General MacArthur command authority over all its armed forces by exchange of public letters on 15 July. Thus Republic of Korea also placed all its military forces under the Unified Command.

Exchange of public letters concerning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dated July 15 ~17, is a treaty in international law. Treaty means any international agreement in written form,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 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 And its legal character is a kind of "speci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Republic of Korea as a non—member state in conformity with Article 43 of the Charter.

The public letter transferred operational command of Republic of Korea forces to the Unified Command is conditioned by "the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as expressed in it.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by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 People's Volunteers, and hostilities ceased on land, sea and air in Korea.

Therefore the letter could not be executive nowadays. And According to a widespread opinion,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a treaty ceases to be valid as the effect of vital change of circumstances,

Thus the command authorities over all armed forces of Republic of Korea could not be exercised nowadays by Suprem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s. The temporal sphere of validity of the public letters had been ended.

I. 序 論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로서 憲法 第50條에 依據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며, 第51條의 規定에 依據 國軍을 統帥한다. 그러나 1950年 7月 15日 李承晩 大統領은 國際聯合軍과의 統一的인 戰略·戰術의 調整을 위해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司令官인 D. MacArthur將軍에게 移讓하는 公翰을 發했고, 同 16日에 駐韓美大使 J. J. Muccio를 通해 D. MacArthur將軍의 回翰이 우리 政府에 接受됨으로써 國軍에 대한 大統領의 作戰指揮權은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國際聯合軍司令官에 移讓되었다.[1,2]

이는 1953年 休戰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우리에게 讓受되지 않은 채 國際聯合軍司令官에 保有되어 있어서 25年前의 狀況과 오늘의 狀況이 判異함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은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것이 現實이다. 韓國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는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司令官이 行使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或者의 國際政治의 理論을 外面하고, 法的 側面에서 이 問題를 論扱하기로 한다.

以下 作戰指揮權의 移讓經緯를 考察하고 作戰指揮權 移讓公翰의 法的 性格과 그의 有效性與否를 檢討하여 國際法과 憲法의 架橋에서 同公翰의 效力喪失의 法理論을 展開하여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에 關係없이 憲法 第51條의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의 實質化의 論據를 提示해 보려는 것이 本稿가 試圖하는 바다.

韓美議定書에 依한 作戰指揮權의 歸屬問題는 軍事秘密에 屬하는 事項이므로 여기서 論外로 하였다.

註 1) L. M. Goodrich, Korea : A Study of United State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 120~21; 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 Oxford u. p., 1970), pp. 211~12.

2) 李大統領의 公翰은 다음과 같다.

MacArthur 將軍 貴下

大韓民國을 위한 國際聯合의 共同 軍事努力에 있어서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作戰中 國際聯合의 陸·海·空軍 모든 部隊는 貴下의 統率下에 있으며, 또한 貴下는 그 最高司令官으로 任命되었음에 鑑하여 本人은 現敵對行爲의 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韓國의 陸·海·空軍에 대한 一切의 指揮權을 移讓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이러한 指揮權은 貴下 自身 또는 貴下가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行使하도록 委任한 기타 司令官이 行使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作戰指揮權移讓의 經緯

1. 韓國動亂의 勃發과 安全保障理事會의 措置

가. 6月 25日의 決議

1950年 6月 25日 새벽 4時 北傀의 南侵이 있자 當日 午前 9時 30分 J.J.Muccio 駐韓美大使는 이 事實을 美國務省에 報告했고[3], D. G. Acheson 國務長官은 電話로 이를 H.S. Truman 大統領에게 報告하여 卽刻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를 召集할 指針을 받았다.[4]

美國의 事務總長에 대한 要請으로 6月 25日 午後 2時(Washington 時間)에 召集된 安全保障理事會는 美國代表 E. A. Gross 大使가 提出한 決議案을 若干 修正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를 採擇했다.[5]

> 大韓民國 政府는 實效的 統制와 管轄權을 가지며 合法的으로 成立된 것이라는 1949年 10月 21日의 總會의 決議를 喚起하면서……
> 이 行爲(南侵)는 平和의 破壞 (a breach of the peace)를 構成한다는 것을 決定하고,
> Ⅰ. 北韓當局(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에 要求한다.
> (a) 앞으로 敵對行爲를 停止할 것. 그리고
> (b) 38線에로 그들의 兵力을 撤收할 것.
> Ⅱ. 韓國委員團(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에 要求한다.
> (a) 38線에로의 北韓軍의 撤收를 監視할 것. 그리고
> (b) 이 決議의 執行을 安全保障 理事會에 報告할 것.
> Ⅲ. 모든 加盟國은 이 決議의 執行에 있어서 國際聯合에게 助力을 하고 北韓當局에게 助力을 주는 것을 삼가할 것을 要求한다.(S/1501)[6]

同決議의 投票는 贊成 9(中國, Cuba, Ecuador, Egypt, France, India, Norway, 英國, 美國), 反對 無, 棄權1(Yugoslavia), 缺席 1(소聯)로 行해졌다.[7]

나. 6月 27日의 決議

6月 25日의 決議(S/1501)에 北韓은 應하지 않았다. 이에 6月 27日 午後 3時(Washington 時間)

註 3) G. D. Paige, The Korean Decision (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 85. 李承晩大統領이 첫 報告를 받은 것은 6時 30分이었다. (R. T.Oliver,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 Doad Mead and Company, 1954), pp. 300~301.).
4) G. D. Paige, op. cit., supra note 3, p. 93.
5) R. Higgins, op. cit., supra note 1, p. 160.
6) Ibid.
7) Ibid.

에 安全保障理事會는 H.S.Truman大統領에 의해 作成되어 美國代表에 依해 提出된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採擇했다.[8]

大韓民國에 대한 北韓으로부터의 兵力에 依한 武力的 攻擊은 平和의 破壞를 構成한다는 것을 決議한다. 그리고 卽刻的인 敵對行爲의 停止를 要求한다.

그리고 北韓當局에 대하여 38線에로 그들의 兵力을 撤收할 것을 要請한다.

그리고 國際聯合韓國委員團의 報告에 依하면 北韓當局은 敵對行爲를 中止하지도 않고 38線으로 그들의 兵力을 撤收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爲해 緊急한 軍事的 措置가 要求된다는 것을 注目한다.

그리고 大韓民國으로부터의 國際聯合에 대해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기 爲한 卽刻的이고 效果的인 措置를 爲한 呼訴를 注目한다.

國際聯合加盟國이 大韓民國領域에서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必要하게 될 大韓民國에 대한 援助를 提供할 것을 勸告한다.(S/1511)[9]

同決議는 賛成7(中國, Cuba, Ecuador, Norway, 英國, 美國), 反對 1(Yugoslavia), 缺席 1(蘇聯)로 採擇되었다.[10]

다. 7月 7日의 決議

6月 27日의 決議(S/1511)에 依據 提供된 加盟國의 軍事的 援助를 效果的, 能率的으로 利用하기 爲해 戰略的 方向과 戰術的 指揮의 統制를 必要로 했다. 그러나 憲章 第47條에 依據한 "軍事參謀委員會"는 蘇聯代表에게 軍事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되므로 利用될 수 없었다.[11]

7月 7日 英國과 佛蘭西의 決議案이 提出되었으며, 이는 美國의 責任下에 "統合司令部"(Unified Command)의 設立을 勸告하는 것이었다.[12]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北韓에 의한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的 攻擊은 平和의 破壞를 이른다고 決定하고, 韓國에 있어서 武力的 攻擊을 擊退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의 回復을 爲해 必要로 하는 援助를 大韓民國에 提供할 것을 國際聯合加盟國에 勸告하면서

1. 武力的 攻擊에 對하여 自己防禦를 하고 있는 大韓民國을 援助하며, 이리하여 그 地域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기 爲하여 1950年 6月 25日 및 27日의 決議에 對하여 國際聯合의 政府 및 人民이 提供한 迅速하고 熱意있는 支援을 歡迎하며,
2.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大韓民國을 爲하여 援助의 要請을 國際聯合에 傳達했다는 것을 注目한다.
3. 前記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依據하여 軍隊와 其他 援助를 提供하는 모든 加盟國은 이런 軍隊와 援助를 美國下의 統合司令部(Unified Command)下에 可容하도록 하는 것을 勸告한다.
4. 이러한 軍隊의 司令官은 美國이 任命하도록 要求한다.
5. 統合司令部는 그의 裁量에 따라 北韓兵力에 대한 作戰過程에서 諸各己 參戰國의 旗와

註 8) G. D. Paige, op. cit., supra note 3, p. 204.
9) R. Higgins, op. cit., supra note 1, p. 162.
10) Ibid.
11)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1, p. 119.
12)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London : Stevens and Sons, 1964), p. 31.

더불어 國際聯合旗를 使用할 權限이 賦與된다.

6. 美國은 統合司令部에 依해 取해진 措置의 過程을 安全保障理事會에 適切한 報告를 提供할 것을 要求한다. (S/1508)[13]

同決議는 贊成7(中國, Cuba, Ecuador, France, Norway, 英國, 美國)棄權3(Yugoslavia, Egypt, India), 缺席1(蘇聯)로 採擇되었다.[14]

2.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設立과 作戰指揮權의 移讓

前述한 바와같이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設立根據는 1950年 7月 7日의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S/1588) 第3項에 의거한 것이다. 美國代表 W. R. Austin은 同決議를 함에 있어서 安全保障理事會에서 美國은 同決議에 包含된 責任을 受諾한다고 宣言했다.[15]

同決議 第4項에 依據, 美國은 7月 8日 D. MacArthur將軍을 駐韓國際聯合軍司令官으로 任命했으며[16], 同決議 第5項에 의거, 事務總長 T. Lie는 7月 8日 安全保障理事會에서 美國代表에게 Palestine에서 使用한 바 있는 國際聯合旗를 手交했으며, 이는 7月 14日 東京에서 美陸軍參謀總長 L. Collins將軍에 의해 D. MacArthur司令官에 移讓되었다.[17]

이에 앞서 H. S. Truman大統領은 D. MacAthur司令官에게 國際聯合旗를 使用할 것을 指示했다.[18]

韓國은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아니었으므로 7月 7日에 決議(S/1588)에 勸告的 또는 法的 拘束力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의 效力은 憲章 第25條의 規定에 의해 加盟國에 대해 法的 拘束力이 있다. 그러나 憲章 第25條의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decision)은 모든 "決議"(resolution)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憲章規定에 의한 "決定"에 限한다고 解釋된다.[19] 따라서 第39條의 "勸告"는 第25條의 "決定"이 아니다.[20]

註 13) R. Higgns, op. cit., supra note 1, pp. 163~64.
14) Ibid.
15)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1, p. 120.
16) Ibid.
17)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United Nations Office of Publications, 1950), p. 230.
R. Higgins, op. cit., supra note 1, p. 195.
18) L. M. Goodrich, op. cit., supra note 1, p. 120.
19) H.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New York : Frederik A. Praeger, 1951), p. 293.
20) Ibid.
6月 25日의 決議(S/1501)는 憲章 第39條에 立脚한 것으로 說明된다. (J. L. Kunz, "Legality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and 27, 1950", A. J. I. I. L., vol. 45, 1951, p.139;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32 ; H. Lauterpac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2, 8th ed. (London ; Longmans, 1958), p. 165 ; S. S. Goodspe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New York : Oxford U. P., 1959), p.222; D. S. Cheer and H.

그러므로 7月 7日의 決議(S/1558)는 加盟國에 대해 勸告의 性質을 가지며 法的 拘束力이 있는 것이 아니다. 韓國은 물론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아니므로 同決議에는 명백히 "加盟國" 또는 "美國"에 勸告한다고 表示되어 있다. 또 同決議가 韓國에 대해 法的 拘束力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統一的인 戰略·戰術의 必要를 느낀 李承晩 大統領은 7月 15日 D. MacArthur 將軍에게 韓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21]

7月 25日 美國은 "國際聯合軍司令部"(United Nations Command)의 設立을 宣言하는 聲明을 發表했다.[22] 이로써 "統合司令部"(Unified Command)의 名稱은 "國際聯合軍司令部"로 採擇된 것이다.[23]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讓受받게 됨에 따라 國際聯合軍司令官인 D. MacArthur將軍은 ① 韓國軍을 포함한 모든 加盟國軍과 美8軍 ② 美極東空軍 ③ 美7艦隊를 指揮했으며, 英國軍을 除外한 모든 加盟國軍은 美軍師團으로 編成이 完了되어 效果的인 指揮와 單一 軍需支援을 可能케 한 것은 1951年 7月 27日이었다.[24]

註 F. Haviland, Organizing for Peace(Massachusetts : Cambrige, 1954), p.454; L. L. Leon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New York : Mc Graw Hill, 1951), pp. 541~42; I.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Oxford : Clarendon, 1963), p.331; L. B. Miller, World Order and Local Disorder (New York : Princeton U. P., 1967), p.29. 그러나 H. Kelsen (H. Kelsen, op. cit., supra note 19, p.931.), J. Stone(J.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New York : Rinchant, 1954, p.229.), R. Higgins(R. Higgins, op. cit., supra note 1, p.196.)은 第40條에 根據한 것이라 한다.

6月 27日(S/1511)의 決議는 憲章上 根據도 第39條에 依據된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 32 ; R. Higgins, op. cit., supra note 1, p. 177 ; F. 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B. Y. I. L., vol. 37, 1961, p. 428.). 그러나 J. L. Kunz(J. L. Kunz, op. cit., p. 140.)는 第40條에 의거한 것으로 보며, J. Stone (J. Stone, op. cit., pp. 232~33, 235.)은 憲章上 根據없는 것이라 한다,

7月 7日의 決議(S/1588)는 6月 25日의 決議(S/1501)와 6月 27日의 決議(S/1511)의 單純한 施行을 위한 것으로 認定된다. 따라서 同決議의 根據는 一般的 見解에 의하면 憲章 第39條에 立脚한 것으로 된다.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 33.).

21)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 40.

22) R. Higgins, op. cit., supranote 1, p. 195.

23) K. Skubiszewski, "Use of Force by States",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 by M. Sørensen(London : Macmillan, 1968), p. 790.

24) F. Seyersted, op. cit., supra note 20, pp. 35~36 ;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p. 40~41.

Ⅲ.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法的 性格

1. 條 約

作戰指揮權의 移讓은 交換公文(exchange of notes)의 形式으로 행해졌다. "條約은 國家 및 國際組織間에 法的 權利·義務를 創定하는 合意이다."[25] 이는 여러가지 名稱이 붙여진다. 예컨대 條約(treaty)· 協約(convention)·協定(agreement)· 決定書(act)· 約定(pact)· 議定書(protocal)· 宣言(declaration)· 規定(status)·規約(convenenant)·憲章(charter)· 約定(arrangement)·合意書(agreed minutes)· 覺書(memorandum)· 交換公文(exchange of note)등이다. 이들 用語間에 本質的 差異는 없으며 國際法上 效力은 그 名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26] 이는 "Nomination of The Netherland Workes Delegate Case" (1922)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所,[27] "The Wimbledon Case" (1923)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所,[28]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West Africa Case" (1950)에서 國際司法裁判所,[29] "Prosewtion for Misdemeanours(Germany) Case" (1955)에서 獨逸裁判所[30]에 의해 각각 表示되었다.

그리고 어떤 名稱을 使用하느냐는 締約 當事者의 自由裁量에 속한다.[31] 따라서 交換公文도 條約이므로[32] 1950年 7月 15日과 同月 16日의 交換公文에 의한 作戰指揮權의 移讓·引受는 條

註 25) 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1, 8th ed. (London : Longman, 1955), p. 877.

26) R. N. Swift, International Law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69), pp. 442~43 ; H. 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25, p. 898 ;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 Holt, 1967), p. 455 ;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 1, 2nd ed. (London : Stevens and Sons, 1970), p. 1950; G. J. Mangone,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Casebook (Illionis : The Dorsey, 1963), p. 71 ; G. H. Hackworth,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5. (Washington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 2.

27) D. P. O'Connell, op. cit., Supra note 26, p. 195.

28) Ibid., pp. 195~96.

29) Ibid., p. 195.

30) Ibid., pp. 195~96.

31) H. W. Briggs, The Law of Nations, 2nd ed. (New York : Appleton), p. 852; L. McNair, The Law of Treaties (Oxford : Clarendon, 1961), pp. 47 ff. ; D. Myers, "Names and Scope of Treaties," A. J. I. L., vol. 51, 1957, p. 574 ; U. S. Headquaters, Department of The Army, International Law, vol. I, 1964, p. 44.

32) W. L. Goul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New York ; Marper and Brothers, 1957), p.301 ;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 Law (Oxford : Clarendon, 1966), p. 488. H. Kelsen op. cit., supra note 26, p. 455, note 31 ; G.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 Stevens and Sons, 1959), p. 154 ; H. W. Briggs, op. cit., supra note 31, p. 836.

約이다. 交換公文에 의한 條約의 締結方式은 簡易方式이나 最近에는 매우 자주 採擇되며,[33] 國際聯合에 登錄된 條約의 約 3分의 1은 交換公文의 形式을 取하고 있다.[34]

交換公文은 國際的 合意의 政治的 動機에 관해 國內的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어서 立法의 發議 또는 國會의 議決을 얻기 어렵다고 考慮될 때 呼訴되는 경우가 많다.[35] 그리고 條約의 延長은 通常 이 方法으로 행해진다.[36]

요컨대 韓國軍의 作戰指揮權移讓에 관한 李承晩 大統領과 D. MacArthur 司令官間의 交換公文은 "條約"으로 兩當事者를 拘束한다.

2. 特別協定

國際聯合에 依한 集團的 强制措置는 憲章 第43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安全保障理事會와 加盟國間에 締結되는 "特別協定"에 따라 加盟國이 兵力을 提供하는 兵力에 의해 취해지도록 憲章은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憲章이 期待한 特別協定은 締結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狀況下에 韓國動亂이 勃發되어[37]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7日의 決議(S/1511)를 통해 加盟國에 대해 韓國에 軍事的 援助를 提供하도록 勸告하는 方途 밖에 없었다.[38]

6月 27日의 決議(S/1511)에 의해 韓國에 兵力을 支援한 加盟國은 事後에 別途의 特別協定을 締結한 바도 없다. 다만 參戰加盟國과 美國間의 雙方的 協定이 締結될 수 있었다.[39] 大韓民國은 다른 參戰國과 달리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官인 D. Mac Arthur將軍과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

따라서 이는 大韓民國이 安全保障 理事會와 兵力을 提供하도록 하는 憲章 第43條의 特別協定을 締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憲章 第43條는 "加盟國"이 特別 協定의 當事者로 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非加盟國도 特別協定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作戰指揮權移讓은 憲章第43條에 規定되어 있는 特別協定의 變形物로 볼 수 있다.

註 33) J. G. Starke,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Butterworth, 1958), p. 287.

34) H. Lanterpacht, op. cit., supra note 25, p. 899, note 5.

35) D. P. O'Connell, op. cit., supra note 26, p. 201.

36) 1817年의 "The Rush—Bagot Agreement relating to Naval Forces on the Great Lakes"는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延長되어 아직도 有效하다. (Ibid., note 25).

37) 1946年 2月 16日 安全保障理事會는 "軍事參謀委員會"에 憲章 第43條의 特別協定을 締結하는 方案의 檢討를 指示한 바 있으며, 1947年 4月 30日과 6月 25日에도 이를 反復要求했으며, 1948年 7月 2日 同委員會는 特別協定의 締結이 없는한 國際聯合軍은 可容될 수 없다고 報告했다. 그 以後 1948年 8月 6日과 16日에도 合議는 繼續되었으나 國際聯合軍에 관한 아무런 進前을 보지 못했다. United Nations, Everyman's United Nations, 6th ed, (New York : United Nations Office of Publication, 1959), pp. 69~70.

38) U. S. Headquaters, op. cit., supra note 31, pp. 141~42.

39) Ibid., p. 142.

Ⅳ.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有效性

1. 國內法上 有效性

舊憲法, 즉 大統領이 作戰指揮權을 移讓할 當時의 最初憲法 第61條 前段은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라 規定하여 國軍統帥權이 大統領에 있음을 明示하고 同 第59條는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라 規定하며 大統領에게 條約締結權을 賦與하였다. 그러나 大統領의 條約締結權은 同 第42條의 規定에 따라 國會의 同意를 얻어 行使하도록 規定되어 있었다. 同條는 現行憲法 第95條 第1項과는 약간 달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었다.

"國會는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대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李承晩 大統領은 國會의 批准同意 없이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 이는 舊憲法 第42條의 違反이 아닌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同條의 規定中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이 該當될 수 있는 것은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이는 檢討를 要한다.

舊憲法 第61條는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라고 規定하고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使한다고 規定하고 있지 않다.[40] 따라서 大統領의 國軍統帥上 發하는 必要한 命令은 一般 大統領의 形式에 의하는 이외에는 別個의 法形式이 없다.[41] 그러므로 舊憲法 第42條의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에 있어서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은 立法事項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條約은 舊憲法 第42條의 國會의 同意를 요치 않는다.

또 舊憲法 第42條는 批准에 대한 國會의 同意權을 規定하고 있을 뿐 締結에 대해 同意權은 規定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作戰指揮權의 移讓은 批准을 要하는 條約인가를 檢討해야 한다.

交換公文은 一般的으로 批准을 요치 않는 條約이다.[42] 다만 交換公文 自體가 批准을 요한다는 規定을 둘 경우는 例外이다.[43] 따라서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은 批准을 要치 않는 條約이므

註 40) 그러나 現行憲法 第51條 第1項은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41) 韓泰淵 : 憲法學(서울 陽文社, 1955), p.464

42) H. 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25, p. 907~908.

43) M.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London : Geoge Allen and Unwin, 1970), p. 156

로 憲憲法 第42條의 國會의 同意를 요치 않는다.[44]

설혹 作戰指揮權의 移讓이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事項이라 할지라도 條約의 締結은 國會法上 司法的 審査의 對象에서 除外되는 統治行爲로 說明된다.[45] 따라서 李承晩 大統領이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한 行爲의 國內法上 效力의 有效性與否는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없다.

2. 國際法上 有效性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作戰指揮權의 移讓은 憲法上 國會의 同意없이 行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憲法 違反行爲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憲法違反이라고 볼때 國際法上 效力의 有無가 論議될 수 있다. 違憲節次에 의해 締結된 條約의 國際法上 效力에 관한 從來의 學說, 判例는 一致되어 있지 않다.

H. Kelsen은 違憲節次에 의해 締結된 條約은 違憲節次로 條約을 締結한 當事者의 相對方에서는 條約의 違憲性 與否를 主張할 수 없으나 違憲節次로 條約을 締結한 當事者는 이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고[46] 한다. 이러한 立場은 "In re Vera Case" (1948)에서 Mexico 大審院

註 44) 그러나 現行憲法下에서는 이렇게 解釋하기 어렵다. 第51條 第1項은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軍을 統帥한다"고 規定하여 第95條의 國會의 同意를 要하는 條約의 하나인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에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은 該當될 수 있을 뿐 아니라 第95條는 條約의 批准뿐이며 '締結'에도 國會의 同意를 要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附則 第6條 第1項은 "이 憲法施行 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45) 文鴻柱 : 韓國憲法(서울:海岩社1973), p. 501.
R. J. Tresolini,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nd ed. (New York : Macmillan. 1965), p. 71.
砂川事件(最高裁, 昭和34年 12月 16日, 大法廷判決)(昭和 34年 (아) 第710號, 日本國과 美合衆國間의 安全保障條約 第3條에 基한 行政協定에 伴하는 刑事特別法違反被告事件)에서 美·日安全保障條約의 日本憲法 第9條에 違反與否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判示하여 條約의 締結은 統治行爲에 屬하며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判示한바 있다.
問題의 安保條約은 司法法院의 審査에는 原則的으로 맞지 않는 性質의 것이고, 따라서 一見 極히 明白하게 違憲無效라고 認定되지 않는 法院의 司法審査의 範圍밖의 것으로써 第1次的으로는 그 條約의 締結權을 가진 內閣 및 그것에 대하여 承認權을 가진 國民의 政治的 批判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解釋하는 것이 타당하다. (我妻榮 編集, 憲法判例百選(新版)(東京:有斐閣1968))長谷川正安, 砂川事件 pp. 166~67.)
우리憲法上 通說(朴一慶,「新憲法」, p. 404, ;韓泰淵,「憲法」, p, 506; 文鴻柱,「憲法」 p. 506; 尹世昌,「憲法」 p.335;;韓東燮,「憲法」, p.361; ;韓相範「憲法」, p.336; 金箕範「憲法講義」,p. 422; 金哲洙,「憲法學槪論」, p. 595; 金道昶「行政法論」,上, p. 26 ; 李尙圭「新行政法」, 上, p. 61; 金南辰, 「行政法」, p. 20) · 判例(64초3, 64초4, 1964. 7. 21 大法院 裁定; 64초 7, 1964. 7. 22 大法院 裁定)는 統治行爲를 肯定하고 있으나 反對說(金鐵容, "우리 憲法과 統治行爲," 韓國司法行政學會編,「法政」, 1964. 6)이 있다.

46) H. Kelsen, op. cit., supra note 26, pp. 461~62.

의 判決에서 表示되었다.[47] D. P. O' Connell은 違憲條約을 締結한 國家도 이 條約上의 義務를 履行할 國際法上 義務가 있다고[48] 한다. 이러한 立場은 "Eastern Greenland Case"(1933)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에 의해 判示되었다.[49] 그리고 違憲條約의 不履行은 國家責任이 成立된다는 判決이 "R. V. Burgess Case" (1936)에서 宣告되었다.[50]

1969年의 "條約法에 관한 Vienna條約" 第46條는 이 點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國家는 條約締結에 관한 國內法規定의 違反이 明白하고 또한 根本的으로 重要한 自國의 國內法規定에 關聯되지 아니 하는 限, 條約의 拘束을 받게 하는 自國의 同意를 無效化시키기 위하여 自國의 同意가 그러한 國內法 規定에 違反되어 表示되었다는 事實을 援用할 수 없다.
② 違反은 通常의 慣行에 依據하고 또는 誠實하게 行動하는 모든 國家에게 客觀的으로 明確한 경우에는 明白한 違反이 된다.

그리고 同 第46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 하고 있다.

特定한 條約의 拘束을 받게 하는 國家의 同意를 表示하는 代表者의 權限이 特別한 制限에 따를것을 條約으로 賦與된 경우에는 代表者가 그러한 同意를 表示하기 前에 同 制限이 他方交涉國에 通告되지 않는 限, 代表者가 表示한 同意를 無效化시키기 위하여 代表者가 그 制限을 遵守하지 아니하였음을 援用할 수 없다.

同 第46條 및 第47條에 미루어 볼때 作戰指揮權移讓이 國會의 同意를 얻지 않은 大統領의 條約締結行爲로서 違憲으로 보거나 또는 作戰指揮權은 性質上 移讓될 수 없는 것으로 그 內容이 違憲이라 할지라도 國際法上은 有效한 것으로 그 效力을 다툴 수 는 없다.[51]

V. 適用 範圍

1. 時間的 適用範圍

作戰指揮權은 永久·無制限으로 移讓된 것은 아니다. "…現 敵對行爲의 狀態가 繼續되는 期間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이라는 不確定期限附로 移讓한 것이다. 여기 "敵對行爲狀態의 解釋이 問題된다. 물론 同公翰中에는 敵對行爲의 定義規定이 없다. 敵對行爲를 定義한 國際條約은 아직 없으며, 1907年의 "Hague協約(第3號)"(Convention No. Ⅲ, Relative to the Opening of Hostilities)에도 敵

註 47) Ibid., p. 462. note 41.
48) D. P. O'Connell, op. cit., supra note 26, p. 219.
49) U. S. Headquarters, op. cit., supra note 31, pp. 141~42.
50) D. P. O'Connell, op. cit., supra note 26, p. 220.
51) 다만 이러한 解釋은 "條約法에 관한 協約이 國家間의 條約에만 適用된다는 點(第1條)과 同協約은 1950年 作戰指揮權을 移讓할 당시에는 存在하지 않았다는 點을 捨像한 것이다.

對行爲를 定義한 規定이 없으며 美國의 "陸戰法"[52] 과 英國의 "軍事教範"에도[53] 敵對行爲의 定義規定이 없다.

그러나 1953年 7月 17日의 休戰協定 第2條 第12項의 "敵對雙方司令官들은 陸海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포함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韓國에 있어서의 一切의 敵對行爲를 완전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라는 規定에 의해 韓國에 있어서의 敵對行爲는 終止되었다.

요컨대 作戰指揮權 移讓公輸中 "敵對行爲狀態"는 1953年 7月 17日附로 終了되고 또 同公輸의 效力도 終了된 것이다. 休戰은 "戰爭狀態"는 繼續되나 "敵對行爲"는 終了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4]

2. 空間的 適用範圍

作戰指揮權의 移讓에는 一定한 空間的 制限의 附款이 附해져 있다. "…韓國內 혹은 韓國近海에서…"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 作戰指揮權을 行使하도록 移讓한 것이다.

따라서 海外에서의 國軍의 作戰指揮權은 留保되어 있다. 실제로 駐越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은 國際聯合 軍司令官이 行使하지 않았다.

Ⅵ. 結　論

6·25動亂間 切迫한 敵의 攻擊에 對置하기 위해 國軍과 支援諸國으로 構成된 國際聯合軍과의 作戰指揮의 統一이 要求되어 大統領은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軍司令官에게 移讓한 것이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作戰指揮權移讓公輸은 國際法上條約이며, 그것은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와 締結한 一種의 '特別協定'(special agreement)의 性格을 갖는다. 이는 비록

註 5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The Law of the Land Warfare (Washington : Government Prnting Office, 1956).

53)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The Manual of Military Law, Part Ⅲ, The Law of War on Land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58).

54) H. S. Levi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 J. I. L., vol. 50, 1956, p. 884 ; M.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Berkely and Los Angeles : (alifornia U. P., 1959), pp. 385~86 ; G. Schwarsenberger, International Law, vol. 2, (London : Stevens and Sons, 1968), p. 726 ; J. M. Spaight, War Right on Land (London, 1911), p. 245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op. cit., supra note 52, para. 479, p. 172 ;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op. cit., supra note 53, para. 428, p. 127.
다만J. Stone은 休戰을 戰爭의 終了 方法으로 理解하고 있다. (J. Stone, op. cit., supra note 20, pp. 639~46.)

國會의 同意없이 大統領이 一方的으로 移讓한 것이라 할지라도 國內法上 有效한 統治行爲로 理解된다. 또 國際法上 이의 效力을 다툴 수 없다.

그러나 同公翰은 그自體에 表示된 時間的 附款인 "敵對行爲狀態의 繼續"은 休戰協定의 發效로 事實上 法律上 終了되어 더 이상 適用될 妥當性을 잃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條約의 終了原因의 하나인 이른바 "事情變更의 原則"(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에 立脚한 重大한 事情의 變更이 25年이 經過한 오늘에 到來되었다.[55] "上部 Savoy와 Gex地方의 自由地帶에 관한 事件"(Free Zone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1932)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所는 事情變更의 原則을 肯定했으며[56] "Lucerne v. Aargau Case"(1882)에서, "Bremen v. Prussia", "In re Lepeschkin Cases" "Stansky v. Zivnostenska Bank Case"[57] 에서도 認定되었다. 1969年의 "條約法에 관한Vienna協約" 第62條는 事情變更의 原則을 認定하였다.

지난 第29次 國際聯合總會는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를 希望하는 決議를 採擇했다.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解體되게될 때 國際聯合軍司令官에 移讓한 作戰指揮權이 당연히 復歸되는 것은 아니다. D. MacArthur司令官에 移讓한 作戰指揮權의 引受當事者는 D. MacArthur將軍도 國際聯合軍司令部도 아니라 國際聯合 自身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安全保障理事會나 國際聯合軍司令部는 國際聯合의 機關에 不過하며 機關은 法人格이 없으므로 國際聯合軍 司令部는 當事者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D. MacArthur司令官이 作戰指揮權移讓公翰에 署名한 것은 安全保障理事會나 國際聯合軍 司令部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國際聯合을 위해서이다.[58]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解體되게 될 때 國軍의 作戰指揮權의 引受에 관한 法的 問題는 整理되어 憲法 第51條의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은 實質化를 기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上記 두 個의 根據, 즉 公翰의 時間的 適用限界와 事情變更의 原則을 論據로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은

註 55) 重要한 事情의 變更은 休戰이 成立되고 事實上 敵對行爲가 終了했다는 事情, 美軍을 除外한 모든 國際聯合軍이 撤收되어 統合指揮의 必要가 없게 되었다는 事情, 派越할 수 있도록 國軍이 育成, 强化되었다는 事情.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를 國際聯合總會가 希望한다는 事情, 7·4南北共同聲明이 宣言되고, 休戰協定의 當事者인 中共이 國際聯合에서 中國을 代表하게 되었다는 事情등의 變更을 들 수 있다.

56) L. McNair, op. cit., supra note 31, p. 690.

57) I. Brownlie, op. cit., supra note 32, p. 499. note 1.

58) 1956年 緊急特別總會의 決議(A/3289, A/3362, A/3943)에 依據 創設된 中近東派遣國際聯合非常軍(UN Emergency Force : UNEF)은 總會의 補助機關으로 理解되며 (K. Skubiszewski, op. cit., supra note 23, p.795 ; D. W. Bowett, op. cit., supra note 12, pp. 94~95 ; S. S. Goodspeed, op. cit., supra note 20, p. 231 ; G. I. A. Draper, "The Legal Limitation upon the employment of Neapons by the United Nations Force in Congo", I. C. L. Q., 1963, vol. 12, p. 391.) 1960年 Congo 事態에 대해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 (S/4387, S/4405, S/4426, S/4741, S/5002)에 依據하여 Congo에 派遣된 Congo派遣 國際聯合軍(Opération des Nations Unies au Congo : ONUC)도 憲章 第29條에 立脚한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으로 說明된다. (G. Rosner, The UNEF, (New York : Columbia U. P.,

이미 그 效力을 喪失하였다는 우리의 立場이 主張되어야 할 것이다.

自主國防은 國軍裝備의 現代化나 全國民의 精神武裝化 또는 國軍의 精銳化나 安保體制의 强化에 依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作戰指揮權의 引受가 先在되어야 한다.

이는 軍의 士氣와 精神力 强化에도 直結된다.

그러나 韓國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는 우리의 自主國防이 現實化 되기까지는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軍司令官이 行使해야 된다는 國際政治的·戰略的 考慮는 여기서 捨像하고 이에 대한 反論에 援用될 수 있는 理論을 여기에 呈示해 보았음을 밝힌다.[59]

註 58) 1961), pp. 59 ;L. P. Bloomfield, International Military Forces, (Boston : Little, Brown, 1964), p. 277 ; G. I. A. Draper, op. cit., p, 392 ; K. Subdiszewski, op. cit., supra note 23, p. 790). 1964, 安全保障理事會와 Cyprus政府間의 協定에 따라 國際聯合平和維持軍(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 UNFICY-P)의 創設을 勸告하는 決議(S/5575)에 의거 設立된 同平和維持軍도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이다. (K.Skubiszewski, op. cit., supra note 23, p. 791.). 韓國의 國際聯合軍司令部도 安保理의 補助機關에 不過하다. (D. W. Bowett, op. cit., supra note-12, pp. 94~95, 178.). 따라서 作戰指揮權은 國際聯合에 移讓한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聯合軍司令部가 解體될 경우 作戰指揮權移讓公翰, 즉 條約은 그 一方當事者의 消滅을 原因으로 同公翰의 效力이 당연히 消滅되는 것은 아니다. 國際聯合의 主要機關인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인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는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59) 以上의 考察은 國軍과 "國際聯合軍"과의 關係에서의 作戰指揮權 問題이며 國軍과 "美軍"과의 關係에서의 그것이 아니다. 後者의 問題는 1954年 11月 17日의 "韓美合意議事錄"(Agreed Minute and Amendments Be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에 規定되어 있으나 이는 保安上 公開가 禁止되어 있어 여기서 論扱하지 못했다.

APPENDIX I

EXCHANGE OF PUBLIC LETTERS CONCERNING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Dear General MacArthur : July 14, 1950.

In view of the common military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all military forces, land, sea and air, of all the United Nations fighting in or near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your operational command, and in which you have been designated Supreme Commander United Nations Forces, I am happy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such cnmmand to be exercised either by you personally or by such military commander or commanders to whom you may delegate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s.

The Korean Army will be proud to serve under your command, and the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will be equally proud-and encouraged to have the overall direction of our combined combat effort in the hands of so famous and distinguished a soldier who also in his person possesses the delegated military authority of all the United Nations who have jointed together to resist this infamous communist assault on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our beloved land.

With continued highest and warmest feelings of personal regard.

Sincerely Yours,

SYNGMAN RHEE

Appendix I

EXCHANGE OF PUBLIC LETTERS CONCERNING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American Embassy,
Taegu, Korea
July 16, 1950.

Dear Mr. President:

I am happy to transmit to you the following message from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with reference to your letter of July in which you designated to his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ver the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resent hostilities.

"Please express to President Rhee my thanks and deepest appreciation for the action taken in his letter of 15 July. It cannot fall to increase the coordinated pow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operating in Korea. I am proud indeed to have the galant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my command. Please tell the President I am grateful for his generous references to me personally and how sincerely I reciprocate his sentiments of regard. Tell him also not to lose heart, that the way may be long and hard, but the ultimate result cannot fail to be victory.

MACARTHUR"

With assurances of my ever continued highest regards, I remain.

Sincerely Yours,
John J. Muccio

The Honorable Syngman Rh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aegu

Appendix Ⅲ

指揮權移讓에 關한 公翰

李大統領 公翰(1950年 7月 15日)

맥아더 元帥 極東軍最高司令部 東京

맥아더 將軍 貴下

大韓民國을 爲한 國際聯合의 共同軍事努力에 있어 韓國內 또는 韓國 近海에서 作戰中 國際聯合의 陸·海·空軍 모든 部隊는 貴下의 統率下에 있으며 또한 貴下는 그 最高司令官으로 任命되어 있음에 鑑하여 本人은 現作戰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一切의 指揮權을 移讓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如斯한 指揮權은 貴下 自身 또는 貴下가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行使하도록 委任한 其他 司令官이 行使하여야 할 것입니다.

韓國軍은 貴下의 麾下에서 服務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韓國國民과 政府도 勇敢하고 훌륭한 軍人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國土의 獨立과 保全에 對한 卑劣한 共產侵略을 對抗하기 爲하여 힘을 合친 國際聯合의 모든 軍事權을 받고 있는 貴下의 全體的 指揮를 받게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또한 激勵되는 바입니다.

貴下에게 個人的인 深厚한 敬意와 溫情을 表하나이다.

1950年 7月 14日

李 承 晩

Appendix Ⅳ

指揮權移讓에 關한 公翰

「맥아더」元帥의 回翰(1950年 7月 16日)

大統領 閣下

現 敵對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大韓民國 陸·海·空軍의 作戰指揮權을 委任한 7月 14日付 貴下의 書信에 關한 맥아더 元帥의 다음과 같은 回信을 傳達함을 本官은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7月 15日字 公翰에 依하여 李大統領이 取하신 措置에 對하여 本官의 衷心으로부터의 感謝와 深甚한 謝意를 그에게 表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韓國內에서 作戰中인 國際聯合軍의 統率力은 반드시 增强될 것입니다. 勇敢無雙한 大韓民國軍을 本官 指揮下에 두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나이다. 李大統領의 本官에 對한 過度한 個人的 讚辭에 對한 謝意와 그에 對하여 本官이 또한 가지고 있는 尊敬의 뜻도 아울러 傳達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들의 將來가 苦難하고 遼遠할지도 모르겠으나 終局的인 結果는 반드시 勝利할 것이므로 失望하시지 마시도록 그에게 傳言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本人의 變함 없는 尊敬 함께

「맥 아—더」

존·무치오

大韓民國大統領

李承晩 閣下